

	스마트학생증발급규정	규정번호	3-6-4
		제정일자	2012.02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스마트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 재학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업무제휴) 재학생 학생증의 경우 스마트학생증 발급사와 업무제휴로 인하여 스마트학생증으로 발급한다.

제4조(스마트학생증 신청 절차 및 발급) ① 신입생의 경우 등록을 필한자에 대하여 스마트학생증 발급에 동의를 받아 스마트학생증 발급사의 절차에 따라 스마트학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.

② 재학생(복학생, 편입생, 재학생포함)의 경우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시 스마트학생증 발급사에 재발급 신청하여 발급을 받는다.

③ 기타 스마트학생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는 스마트학생증 발급사와 협의 하여 결정 후 공고한다.

제5조(스마트학생증규격) 스마트학생증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스마트학생증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스마트학생증 발급사에서 제공되는 재질로 한다.
2. 스마트학생증 규격은 가로 8.5Cm 이내 세로 5.4Cm 이내로 한다.

제6조(스마트학생증 효력정지) 스마트학생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정지하여야 한다.

1. 학생이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상실한 경우 스마트학생증의 효력을 정지한다.
2. 학생증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시 기존 학생증의 효력이 상실된다.

제7조(유효기간) 스마트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우리대학 재학중에 등록을 필한 학기로 한다.

제8조(스마트학생증발급내역) 스마트학생증 발급내역은 학생성공처에서 관리한다.

제9조(스마트학생증 휴대) 재학생의 경우 교내에서는 항상 휴대하여야하며, 교·직원의 제시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